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종합계획 수립 시 관련 기관·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안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814호,
제2205816호, 제2205817호, 제2205818호,
제2205819호, 제2205820호, 제2205822호)

2025. 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2.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3.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
4. 김치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
5.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6.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7.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2.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3.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4
4. 김치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4
5.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6.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7.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6
Ⅲ. 제21대국회 심사경과	7
Ⅳ. 검토의견	8
1. 개정안의 취지	8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8
3.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16
4. 개별 법률안별 검토의견	17
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나.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다.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7
라. 김치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0
마.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7
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3
사.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50

I. 제안경위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발 의 자 : 안호영위원

나. 발 의 일 : 2024. 11. 22.

다. 회 부 일 : 2024. 11. 25.

2.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발 의 자 : 안호영위원

나. 발 의 일 : 2024. 11. 22.

다. 회 부 일 : 2024. 11. 25.

3.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발 의 자 : 안호영위원

나. 발 의 일 : 2024. 11. 22.

다. 회 부 일 : 2024. 11. 25.

4. 김치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발 의 자 : 안호영위원

나. 발 의 일 : 2024. 11. 22.

다. 회 부 일 : 2024. 11. 25.

5.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발 의 자 : 안호영위원

나. 발 의 일 : 2024. 11. 22.

다. 회 부 일 : 2024. 11. 25.

6.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발 의 자 : 안호영위원

나. 발 의 일 : 2024. 11. 22.

다. 회 부 일 : 2024. 11. 25.

7.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발 의 자 : 안호영위원

나. 발 의 일 : 2024. 11. 22.

다. 회 부 일 : 2024. 11.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

2.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단체 등 이해관

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7항 신설).

3.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낙농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진흥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낙농가, 낙농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4. 김치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종합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김치산업과 관련된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5.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5년마다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종합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능성 양잠농가 및 기능성 양잠산업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항 신설).

6.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및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종합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

7.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종합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말사업자 및 말산업과 관련된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신설).

Ⅲ. 제21대국회 심사경과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 법률안(안호영의원안)이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전체회의에 상정(2023. 02. 20.)되어 소위원회에 회부였으나, 이
후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됨.

【제21대국회 발의 및 심사경과】

연번	의안번호	제명	발의자	발의일 (회부일)	상정일
1	2124810	김치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의원	2023.9.27. (2023.10.4)	2023.11.23.
2	2124811	낙농진흥법			
3	2124816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2124847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5	2124848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2124849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			
7	2124851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IV.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취지

개정안은 ‘기본계획 또는 종합계획’ 등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이해관계자,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반적으로 ‘기본계획 또는 종합계획’ 등을 수립할 경우 간담회, 포럼, 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관 부처와 이해관계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계획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개별 법률상 명시적 규정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기본계획 또는 종합계획’ 등 수립 시 이해관계자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수렴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현장의 요구를 청취하고 반영하는 절차를 법제화함으로써 기본계획 또는 종합계획’ 등에 따라 추진되는 정책의 신뢰성 및 실행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기본계획·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

7개의 개정안은 5년마다 ‘기본계획·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또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산업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일반적으로 ‘기본계획 또는 종합계획’은 행정청이 정책을 종합·조정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중장기적 계획이고, 시행계획은 ‘기본계획 또는 종합계획’을 구체화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단기적인 계획을 의미함.

【기본(종합)계획과 시행계획】

구분	기본(종합)계획	시행계획
목적	정책의 장기적 방향성과 기본 틀 제시	기본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
내용	비전, 목표, 중점 추진과제, 주요 정책 방향 제시	실행 일정, 세부 사업 등 실질적 내용 포함
수립주기	일반적으로 중장기(5~10년 이상)	일반적으로 단기 (1~5년 이내)
수립주체	일반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일반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7개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각각 의견청취 대상계획, 의견청취 대상자 등에 차이가 있음.

① 현행 「농촌융복합산업법」은 기본계획(5년마다, 농식품부장관)과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매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기본계획은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은 ‘시·도 및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반면, 이해관계인 의견청취에 대한 사항은 두고 있지 않음.

개정안은 이 중 기본계획에 대해서만 관련 단체 의견청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② 현행 「농업생명자원법」은 기본계획(5년마다, 농식품부장관)과 시행계획(매년, 농식품부장관)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 별도의 위원회 심의나 관계인 의견청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개정안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

③ 현행 「낙농진흥법」 및 시행령은 낙농진흥계획(매년, 농식품부장관)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별도의 위원회 심의나 의견청취절차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개정안은 의견청취 절차를 추가하려는 것임. 참고로, 낙농진흥법의 경우, 법률에 낙농진흥계획만을 규정, 시행계획은 시행령에서 규정함.

④ 현행 「김치산업진흥법」은 종합계획(5년마다, 농식품부장관)과 시행계획(매년, 농식품부장관)을 수립하도록 하고, 종합계획에 한하여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의견청취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개정안은 종합계획에 대하여만 의견청취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

⑤ 현행 「양잠산업법」은 종합계획(5년마다, 농식품부장관), 시행계획(매년, 농식품부장관),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매년, 농진청장)을 수립하도록 하고, 종합계획은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

치도록 하고 있으나, 의견청취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음.

개정안은 종합계획에 대하여만 의견청취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

⑥ 현행 「귀농어·귀촌법」은 종합계획(5년마다, 농식품부장관·해수부장관), 시행계획(매년, 농식품부장관·해수부장관),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매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수립하도록 하고, 종합계획은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은 ‘시·도 및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의견청취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음.

개정안은 종합계획에 대하여만 의견청취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

⑦ 현행 「말산업육성법」은 종합계획(5년마다, 농식품부장관)과 시행계획(매년, 농식품부장관)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 별도의 위원회 심의나 이해관계인 의견청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개정안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별 주요 내용】

구분			농촌융복 합산업법	농업생명 자원법	낙농 진흥법	김치산업 진흥법	양잠 산업법	귀농어· 귀촌법	말산업 육성법
현 행 법	개요	기본 계획	기본계획 (5년 농식품부장관)	기본계획 (5년 농식품부장관)	낙농진흥계획 (매년 농식품부장관)	종합계획 (5년 농식품부장관)	종합계획 (5년 농식품부장관)	종합계획 (5년,농식품부 해수부장관)	종합계획 (5년 농식품부장관)
		시행 계획	-	시행계획 (매년, 농식품부장관)	*시행계획 (매년, 농식품부장관) -시행령	시행계획 (매년, 농식품부장관)	시행계획 (매년, 농식품부장관)	시행계획 (매년, 농식품부장관)	시행계획 (매년, 농식품부장관)
		기타 계획	시도계획 (매년, 시도지사) 시군계획 (매년, 시장군수구청장)	-	-	-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매년, 농진청장)	시도계획 (5년 시도지사) 시군계획 (5년 시장군수구청장)	-
	위원회 심의	기본 계획	○	×	×	○	○	○	×
		시행 계획	-	×	-	×	×	×	×
		기타 계획	○	-	-	-	×	○	-
	의견 청취	기본 계획	×	×	×	×	×	×	×
		시행 계획	-	×	-	×	×	×	×
		기타 계획	×	-	-	-	×	×	-
개 정 안	의견 청취 신설	기본 계획	○	○	○	○	○	○	○
		시행 계획	-	○	-	×	×	×	○
		기타 계획	×	-	-	-	×	×	-
	청취 대상	농촌융복합 산업과 관련된 단체 등	책임기관, 대학,연구소, 농업생명 자원 관련 기관·단체등	낙농가 및 낙농관련 단체 등	김치산업과 관련된 단체 등	기능성 양잠농가 및 기능성 양잠산업과 관련 단체등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등	말사업자 말산업과 관련된 기관·단체등	
	부칙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자료: 개정안 요약 작성

개정안들은 ‘기본계획·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해관계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의견청취 절차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또한, 이미 농림축산식품부가 ‘기본계획·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 시 수행하고 있는 의견청취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려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런데 7개의 개정안 중 2개의 개정안(「농업생명자원법」, 「말산업 육성법」)의 경우에는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 또는 종합계획’ 뿐 아니라 그에 근거하여 매년 작성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에도 의견청취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5개의 개정안(「농촌융복합산업법」, 「낙농진흥법」, 「김치산업진흥법」, 「양잠산업법」, 「귀농어귀촌법」)과 차이가 있음.

이에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의견청취 절차를 ‘기본계획 또는 종합계획’에 적용할 것인지, ‘시행계획’까지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7개의 현행 법률 중 4개의 법률(「농촌융복합산업법」, 「김치산업진흥법」, 「양잠산업법」, 「귀농어귀촌법」)은 ‘기본계획·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시 관련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해당 심의과정에서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일부 개정안(「농촌융복합산업법」, 「김치산업진흥법」 등)의 경우는 의무적 의견 청취 대상이 ‘관련 단체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행정절차법 제52조(국민참여 활성화)에서 국민의견 청취에 관하여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개정 실익이 없다는 농식품부의 의견에 대해서는, 동 조항만으로 개별 법률에 따른 계획수립시에 필수적으로 관계인 의견 청취를 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관련 규정】

「행정절차법」

제52조(국민참여 활성화) ① 행정청은 행정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청취 의무화에 부정적인 농림축산식품부 의견을 고려할 때 ‘필요한 경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재량규정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의견청취를 두고 있는 입법례는 일반적으로 의무적 형태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입법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또는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③ 산림청장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나. 부칙

7개의 개정안은 모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에 관한 부칙을 두고 있음.

다만,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개정안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반영한 새로운 기본계획 또는 종합계획을 어느 시점에 수립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① 기본계획 또는 종합계획 등의 다음번 수립 주기 도래 이전에 의견청취절차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할 것인지,

② 개정사항을 법률 시행일 이후 수립 주기가 도래하는 계획부터 반영하도록 할 것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입법례를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업법례】

유 형	입 법 례
수립 주기 도래 이전에 의견청취절차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 (제1유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부칙 <법률 제19017호, 2022. 10. 18.> 제2조(기본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u>이 법 시 행 이후 1년 이내에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u>
법률 시행일 이후 수립 주기가 도래하는 계획부터 반영 (제2유형)	「관광기본법」 부칙 <법률 제20075호, 2024. 1. 23>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u>이 법 시 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u>

다만, 각 계획을 수립할 때, 농림축산식품부는 어느 정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제2유형과 같이 향후 계획 수립 시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채택하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임.

3.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계획 또는 종합계획’ 등의 수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나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관련 내용이 「행정절차법」 제52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 개정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4. 개별 법률안별 검토의견

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기본계획 수립 시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단체 등의 의견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촌융복합산업의 종합적인 체계 구축 및 기반 조성	2. 농촌융복합산업의 종합적인 체계 구축 및 기반 조성
3.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이해증진에 관한 사항	4.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이해증진에 관한 사항
5.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유통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유통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6. 농촌융복합산업과 다른 산업 간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6. 농촌융복합산업과 다른 산업 간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7. 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농촌융복합산업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8. 농촌융복합산업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9. 소규모, 여성 또는 청년(청년의 나이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청년농어업인의 나이를 따른다. 이하 같다)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소규모, 여성 또는 청년(청년의 나이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청년농어업인의 나이를 따른다. 이하 같다)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0.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u><신설></u>	<u>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
⑥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에 따른 기본계획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의 비전·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추진 전략·과제를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농촌융복합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부처 간 정책 조율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며,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11월, 지속가능한 농촌경제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고도화를 목표로 하는 “제2차(’21~’25)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2차('21~'2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주요내용】

비전	지속가능한 농촌경제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고도화	
목표	■ 농촌융복합산업 규모 확대 : ('19) 2.5조원 → ('25) 4.5 ■ 국민 농촌관광 경험을 향상 : ('18) 41% → ('25) 50%	
주요 추진 과제	① 경영체 육성	■ 혁신적 사업체의 창업 유도 ■ 농촌융복합 경영체 경쟁력 강화 ■ 판로지원 다양화
	② 지역단위 산업 생태계 조성	■ 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혁신거점화 ■ 농공단지 활력 제고 ■ 지역 푸드플랜과 연계 강화 ■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③ 농촌관광 활성화	■ 농촌관광 기반 조성 및 정비 ■ 소비자 접근성 및 신뢰도 제고 ■ 프로그램 다양화 ■ 농촌관광 주체 역량 강화
추진체계	◆ 지원기관 역량 강화, 정보관리 체계 정비, 소비자 인식 제고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 (2024.12.20. 제출)

그런데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때, 정책의 현장 적합성 및 정책대상자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같은 취지에서, 「제2차 기본계획('21년~'25년)」을 수립할 때 정책협의회,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 등 다양한 경로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관계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한 바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내역】

- 제2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21.11월) 시 시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인증사업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 제2차 농촌융복합산업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농촌경제연구원, '20.4~10월)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대상 설문조사 및 전문가 자문('20.9, '20.12)
 -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사업 개선방안,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과제 발굴 등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센터장 회의('20.6월, 10월)
 - *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방안, 로컬푸드 등 연계 방안, 인증제도 개선 등
-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예비 인증사업자 제도 도입, 자금·판로 등 지원 확대, 지원기관 역량 강화 등 대책 반영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 (2024.12.20. 제출)

개정안은 기본계획 수립 시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의견수렴 절차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법률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7조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시행계획의 수립단계에 의견수렴절차를 반영할 필요 여부에 대하여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현행법은 기본계획 수립 전에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일부 가능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동 심의회를 ①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12인) ②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의 교수·연구위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종사 경력자(7인)로 구성하고 있어 해당 심의과정에서 농촌융복합사업 사업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바, 의견수렴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관련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9조(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중앙 농업정책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 농업정책심의회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중앙 농업정책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1.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2명 이내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교수·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7명 이내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생략)

⑥ 중앙 농업정책심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 농업정책심의회에 전문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위원회 위원】

구분	순번	소속 및 직위	임기시작일	임기종료일
민간위원 (18명)	1	농협중앙회 회장	당연직	당연직
	2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당연직	당연직
	3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당연직	당연직
	4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당연직	당연직
	5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당연직	당연직
	6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회장	당연직	당연직
	7	한국농축산연합회장 상임대표	당연직	당연직
	8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	당연직	당연직
	9	한국외식산업협회 회장	당연직	당연직
	10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당연직	당연직
	11	(사)소비자시민모임 회장	당연직	당연직
	12	한국식품연구원 연구위원	2020.12.26.	2025.6.30.
	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2020.12.26.	2025.6.30.
	14	서울대학교 교수	2020.12.26.	2025.6.30.
	15	(前)경북대학교 교수	2020.12.26.	2025.6.30.
	16	대한영양사협회 회장	2020.12.26.	2025.6.30.
	17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표	2020.12.26.	2025.6.30.
	18	농수축산신문 발행인	2020.12.26.	2025.6.30.
정부위원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당연직	당연직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2024.12.20. 제출)

또한, 의견수렴의 대상이 되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단체 등’의 범주가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¹⁾ 및 제24조에 따른 협회등²⁾”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 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협회의 설립 등) ①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는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품목별·지역별 단체 또는 전국 단위의 협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농촌융복합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 연구 및 개선 건의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저작권·상표권 등의 보호 활동 지원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공동의 홍보·마케팅·품질관리

나.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안의 내용

현행법은 농업생명자원³⁾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책임기관, 대학, 연구소 등 농업생명자원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생명자원의 수집·평가 및 등록에 관한 사항	1. 농업생명자원의 수집·평가 및 등록에 관한 사항
2. 농업생명자원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업생명자원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업생명자원의 분양 등 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3. 농업생명자원의 분양 등 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에 관한 사항	4.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에 관한 사항
5. 농업생명자원의 정보화 구축 등에 관한 사항	5. 농업생명자원의 정보화 구축 등에 관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협회등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회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협회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3) “농업생명자원”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를 말한다.

현행	개정안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관, 대학, 연구소 등 농업생명자원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u><신 설></u> 제14조(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운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안전한 보존·관리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생명자원의 확보·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 농업생명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3. 농업생명자원의 중장기 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농업생명자원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2) 검토의견

현행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농업생명자원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수집·평가·등록, 보존·관리, 이용촉진 등에 관한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부처 간 조율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4월, 농업생명자원의 확보·보존 등의 전략 수립을 골자로 하는 “제4차(’24~’28)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4차('24~'28) 기본계획 주요내용】

3대 전략 및 8대 과제	
① 농업생명자원의 확보·보존	① 농업생명자원의 수집·확보 ② 보유자원의 증식·보존 ③ 농업생명자원의 분석·평가 ④ 자원관련 국제 이슈 대응 강화
② 민간의 자원 활용 지원 확대	⑤ 농업생명자원 활용 기업 산업화 지원 ⑥ 농업생명자원 정보서비스 개선
③ 자원이용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⑦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확대 및 제도 정비 ⑧ R&D, 인력양성 등 자원활용 기반 확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그린바이오산업팀 (2024.12.20. 제출)

그런데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농업생명자원의 수집·평가·등록, 보존·관리, 이용촉진 방향을 설정할 때, 정책의 현장 적합성과 정책대상자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책임기관, 대학, 연구소 등 농업생명자원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같은 취지에서 제4차 기본계획을 수립(2024. 4.)할 때 농업생명자원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 계획 수립에 반영한 바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제4차 종합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내역】

- (추진경과) 실무작업반 구성('23.2월) 후 연구용역 실무회의(10회) 및 전문가 검토회의(3회) 등 유관기관 및 전문가 검토 거쳐 기본계획 마련('24.4월)
 - 실무작업반 구성('23.2월) : 책임기관(농진청, 산림청, 검역본부) 20명, 전문가 4명
 - 기관별 추진계획 작성('23.3~4월) 및 기관별 중점 추진계획 협의('23.4월)
 - 연구용역 수행('23.5~12월) : (주관연구기관) 동국대학교
 - 세부추진계획 검토('23.11월) : 책임기관(농진청, 산림청, 검역본부) 6명

- 성과지표별 추진실적 검토('24.1월) : 책임기관(농진청, 산림청, 검역본부) 6명, 외부 전문가 2명
- 기본계획(안) 검토('24.2월) : 책임기관(농진청, 산림청, 검역본부) 18명, 외부 전문가 2명
- 분야별 전문가 검토회의('24.4월 3회 / 작물·미생물, 축산, 산림·수의분야) : 책임기관(농진청, 산림청, 검역본부) 20명, 산·학계 등 30명

○ **(주요 반영의견)** 보유자원의 이용 확대를 위한 산업화 기반 마련 및 우수한 자원보관시설(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 민간이용 확대 등 의견 반영

- (작물·미생물 분야) 식품·미생물 등 영세기업에서는 자원의 효능·안전성 등 자체적으로 평가할 여력이 없어 산업화 지원 필요
 - * 산업화 지원사업('24년 신규) : 그린바이오 제품상용화(9.75억원), 그린백신품질고도화(5.25)
- (수의생명자원 분야) 생물안전 3등급(BL3) 실험실 개방 확대 필요
- (산림 분야) 산림자원의 대량재배 및 원료 표준화, 제형화·제품화 등 산업화에 필요한 사업 발굴 필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그린바이오산업팀 (2024.12.20. 제출)

개정안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농업생명자원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의견수렴 절차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법률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안의 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낙농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낙농진흥계획 수립 시 낙농가⁴⁾ 및 낙농관련단체⁵⁾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낙농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낙농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3. 낙농 기술 향상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4.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5. 원유의 품질 향상과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6. 원유의 집유, 수송 및 저장시설과 장비에 관한 사항 7. 학교 우유 급식, 소비 홍보 등 유제품의 수요 확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낙농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낙농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낙농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3. 낙농 기술 향상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4.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5. 원유의 품질 향상과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6. 원유의 집유, 수송 및 저장시설과 장비에 관한 사항 7. 학교 우유 급식, 소비 홍보 등 유제품의 수요 확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낙농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낙농가 및 낙농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4) 「낙농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집유(集乳)”란 낙농가(酪農家)가 생산한 원유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5) 「낙농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낙농관련단체”란 낙농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생산자단체와 유가공업(乳加工業)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유가공 관련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2) 검토의견

「낙농진흥법」 전부개정(법률 제5349호, 1999. 1. 1. 시행) 당시 신설된 규정인 낙농진흥계획은 낙농진흥의 비전·목표와 이의 달성을 위한 주요 추진 전략·과제를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낙농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서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⁶⁾ 있으나,

그 수립 과정에서 관련 위원회·심의회를 거쳐거나, 낙농가 및 낙농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법률에 두고 있지는 아니함.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는 「낙농진흥법」 제3조 및 「낙농진흥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달리, 1999년 이후 현재까지 낙농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낙농진흥계획과 유사한 취지로 낙농업 구조 개선 등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맞추어 관련 대책을 수립⁷⁾해 왔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 수립한 대책은 '24년 7월 수립한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임.

6) 「낙농진흥법시행령」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의 낙농진흥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7)

그런데 낙농진흥 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제고하고 정책대상자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낙농가 및 낙농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개정안은 낙농진흥계획 수립 시 낙농가 및 낙농관련단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의견수렴 절차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법률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제3조에서 낙농진흥계획을 약칭한 바 없으므로, 개정안 제3조 제2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을 “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라.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안의 내용

현행법은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종합계획 수립 시 김치산업과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산업진흥법」 제4조에 따른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에 종합계획이 반영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산업진흥법」 제4조에 따른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에 종합계획이 반영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1.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김치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2. 김치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3. 김치의 품질표준화 및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3. 김치의 품질표준화 및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4. 김치 및 김치재료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	4. 김치 및 김치재료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
4의2. 수입김치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의2. 수입김치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김치 관련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5. 김치 관련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6. 김치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6. 김치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7. 김치의 소비촉진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7. 김치의 소비촉진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8.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8.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9.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9.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김치산업과 관련된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2) 검토의견

현행법에 따른 종합계획은 김치산업 진흥의 비전·목표와 이의 달성을 위한 주요 추진 전략·과제를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부처 간 정책 조율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7월, 김치의 글로벌 건강 발효식품 도약을 목표로 하는 “제3차(’23~’27)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3차('23~'27)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 주요내용】

비전	최고의 품질로 글로벌 건강 발효식품으로 도약	
목표	■ 김치 산업규모 : ('21) 5.3 → ('27) 7조원 ■ 김치 수출액 : ('22) 1.4 → ('27) 3억불 ■ 중소 수출업체 종균 보급률 : ('22) 18.4 → ('27) 90%	
주요 추진 과제	① 혁신으로 초격차 경쟁력 확보	■ 종균 개발 및 핵심 원천기술 확보 ■ 김치산업 선진화 및 혁신 기반 마련
	② 수출 활성화 기반 확충	■ 현지 맞춤형 상품 다양화, 프리미엄화 ■ 현장 기술개발 등 수출 경쟁력 제고 ■ 한류 연계 해외시장 확장
	③ 고품질 원료의 안정적 수급	■ 김치 원료의 안정적 조달체계 구축 ■ 기후변화 대응 우수 원료 생산지원 강화
	④ 가치·소비확산	■ 김치 3-GO 프로젝트 추진 ■ 소비 저변 확대 및 전문 인력 양성
추진체계	◆ 김치산업 발전 협의 채널 활성화, 통계 고도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외식산업정책과 (2024.12.20. 제출)

그런데 김치산업 진흥 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제고하고 정책대상자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김치산업 진흥정책 방향 등을 설정할 때 김치산업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같은 취지에서 「제3차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 ('23~'27)」을 수립할 때 정책협의회, 업체간담회,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 등 다양한 경로로 김치생산업체, 김치협회, 수출조합 등 이해 관계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한 바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3차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내역】

- (기간) '22.6.~'23.4.
- (대상)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유관기관·협회 및 김치업체 등
- (의견수렴 방식) ① 김치 관련 협회 및 김치업체 등과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대면회의 위주로 진행
② 타 부처, 유관기관 등은 정책협의회 개최, 공문을 통한 서면 의견요청 등 다양한 형태로 의견수렴
- (주요 반영결과) ① (김치업체) 원료 장기저장 기술, 상품김치의 장기유통 기술 등 현장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② (세계김치연구소) 김치 중주국 위상 제고 방안으로서 종합홍보전략 마련, 김치 관련 이슈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김치산업 관계 기관 간 협의 채널 구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외식산업정책과 (2024.12.20. 제출)

개정안은 종합계획 수립 시 김치산업 관련 단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의견수렴 절차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법률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4조제6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시행계획의 수립 단계에 의견수렴절차를 반영할 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현행법은 종합계획 수립 전에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일부 가능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동 심의회를 ① 공무원 ②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 기관의 임직원, ③ 식품분야 전문가, 사업자단체 임직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심의과정에서 김치산업 관련 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의견수렴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관련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 자
 2. 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 자
 3. 다음 각 목의 단체 및 기관 소속 임직원 중에서 그 단체 및 기관의 장으로부터 각 1명의 추천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자
 - 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4.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자
 - 가. 식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 나. 식품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임직원
 - 다.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임직원
- ④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위원】

구분	소 속	비고
당 연 직 (9)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장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국장	
	농촌진흥청 농식품자원부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이사	
	농협경제지주 식품가공본부장	
	농경연 식량경제연구본부장	
	한국식품연구원 식품융합연구본부장	
학 계 (7)	건국대학교 식품유통공학과 교수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경희대 Hospitality경영학과 교수	
	전주대학교 한식조리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교수	
	전남대학교 해양바이오식품학과 부교수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관련 협회 및 업계 대표 (11)	한국식품산업협회 부회장	
	대한민국식품명인협회 회장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부회장	
	대한민국김치협회 회장	○
	한국막걸리협회 회장	
	한국외식산업협회 부회장	
	한국미식관광협회 부회장	
	CJ제일제당 부사장	
	대천브루어리 대표	
	그랜마찬 대표	
	어메스 대표	
어로 산업 소비자 단체 (3)	농민신문사 사장	
	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대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외식산업정책과 (2024.12.20. 제출)

한편, 의견수렴의 대상이 되는 ‘김치산업 관련 단체 등’의 범주가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김치사업자⁸⁾ 및 제1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⁹⁾”로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8) 「김치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김치사업자”란 김치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김치산업 진흥법」 제18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김치사업자는 김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 및 지도·감독·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김치와 어울리는 식문화 보급 등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2. 김치의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
3. 김치산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김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회원 상호 사이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5. 김치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김치산업 진흥·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사업자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마.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안의 내용

현행법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5년마다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종합계획 수립 시 기능성 양잠농가¹⁰⁾ 및 기능성 양잠산업¹¹⁾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5년 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능성 양잠산업의 현황과 전망 2.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방향 및 목표 3. 기능성 양잠산업의 경제적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 전략 4. 기능성 양잠산업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5. 기능성 양잠 기술교육 및 지원인력의 육성방안 6. 기능성 양잠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성 양잠 관련 사업 지원방안 8. 그 밖에 기능성 양잠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0)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기능성 양잠농가”란 기능성 양잠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11) 1. “기능성 양잠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인체에 유용한 효과를 주는 식품·소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누에, 뽕나무, 누에고치, 오디, 뽕잎,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을 생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산업
나. 누에, 뽕나무, 누에고치, 오디, 뽕잎,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로부터 인체에 유용한 효과를 주는 식품·소재 등을 생산하는 산업
다. 가목에 따른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이나 나목에 따른 식품·소재 등(이하 “양잠산물등”이라 한다)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라. 그 밖에 양잠산물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현행	개정안
<u><신설></u>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성 양잠농가 및 기능성 양잠산업과 관련된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⑦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⑩ (현행 제4항에서 제9항까지와 같음)

2) 검토의견

현행법에 따른 종합계획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비전·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추진 전략·과제를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부처 간 정책 조율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3월, 곤충·양잠 분야의 첨단 생명소재 산업육성을 목표로 하는 “제3차(’21~’25)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3차(’21~’25) 종합계획 주요내용】

비전	곤충·양잠 분야를 첨단 생명소재 산업으로 육성	
목표	◆ 국내 곤충·양잠 산업 규모: (’19) 900억원 → (’25) 1,400억원 ◆ 국내 곤충·양잠산업 고용 규모: (’19) 7,000명 → (’25) 9,000명	
추진전략	◆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기능성 연구, 수요처 발굴 및 수출 확대 ◆ 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직화된 생산·유통 주체 육성 및 스마트화 ◆ 곤충·양잠산업 지원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인식개선	
부가가치 제고	① 소재 및 기술 등 연구개발 확대	
	■ 곤충 유래 대체 단백질 소재 개발 ■ 소비자 인지도 높은 제품 개발 ■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	■ 양잠산물 기능성 연구 ■ 지역곤충자원화센터 기능 강화
	② 수요처 발굴 및 수출 확대	
	■ 프리미엄 반려동물 시장 진입	■ 양잠산물 수출 추진
인프라 구축	③ 조직화된 생산·유통 주체 육성	
	■ 사료용 곤충 계열화 체계 구축 ■ 식용·사료용 곤충 거점단지 구축 ■ 양잠 특화단지 조성	■ 곤충 광역유통사업단 활성화 ■ 곤충 생산자 협동조합 구성
	④ 생산방식의 스마트화	
	■ 스마트 사육시설 확충	■ 곤충사육시설 개·보수
지원기반 강화	⑤ 제도 및 규제 개선	
	■ 수출입 규정 개정 ■ 양잠산물 품질제고	■ 불합리한 규제 개선 ■ 곤충산업법 개정
	⑥ 곤충·양잠 인식개선	
	■ 경진대회, 외래종 도입 ■ 방송, 온·오프라인 홍보	■ 곤충 가치 홍보 ■ 곤충에 대한 인식개선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그린바이오산업팀 (2024.12.20. 제출)

그런데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제고하고 정책대상자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때, 기능성 양잠농가 및 기능성 양잠산업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같은 취지에서 「제3차 종합계획('21~'25)」을 수립할 때 정책협의회, 전문가·업체 포럼 등을 개최하여 기능성 양잠 업체, 영농조합법인, 대한잠사회, 양잠협동조합 등 이해 관계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한 바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제3차 종합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내역】

- '제3차 종합계획' 전문가 회의('20.2.14, '20.5.28.)
 - 품질의 표준화, 정확한 시장규모 분석, 판매처 확보, 기능성 제품 및 소재 개발, 양잠농가 현대화 및 규모화 등 개선과제 논의
 - * (참석) 농식품부, 농진청, KREI, 지자체(7개), 전남대, 대한잠사회, 업체, 농협 등
 - 국내·외 곤충·양잠 산업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20.4.~11.)
 - * 양잠 : (수행) 농진청, KREI, (사업비) 80백만원, (기간) 4.1~11.30
 - '제3차 종합계획' 전문가·업체 포럼
 - ('20.7.28.) 양잠산업 생산 및 가공분야 논의(생산자 중심)
 - * (참석) 농식품부, 잠사회, 업체(고니골, 부안병영농조합법인, 산청양협), 부안군 등
 - ('20.8.7.) 양잠산업 유통 및 소비분야 논의(업계 중심)
 - * (참석) 농식품부, 농진청, 잠사회, 업체(이레농원, 누보, 헬스파크) 등
 - ('20.8.21.) 양잠산업 기술개발(R&D) 분야 논의
 - * (참석) 농식품부, 농진청, 잠사회, 경남·경북 농업기술센터 등
 - ('20.8.28.) 양잠산업의 정책 및 전문인력 양성 분야
 - * (참석) 농식품부, KREI, 잠사회, 경북·전북 농업기술센터 등
 - '곤충의 날' 행사와 연계한 대국민 공청회 실시(온라인)('20.9.7.)
 - * (발제) 곤충·양잠산업 가치사슬 단계별 발전방안(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
 -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 및 협조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20.10.21.)
 - * (참석기관) 환경부, 해수부, 식약처,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관리공단, 대한잠사회 등
 - '제3차 종합계획' 정책협의회('21.3.17.), 종합계획 발표('21.3.30.)
 - * 최종보고서(안)에 대한 질의·응답 및 추가 보완사항 논의
- < 주요의견 >
- (유통·소비분야) 마케팅 방법이 매우 중요하여 온라인 홍보 방안을 통해 누에에 대한 제품 다양화 필요 및 소비자 인식개선 필요
 - ⇒ (반영) 인지도 제고를 위한 다큐멘터리, 심포지엄 등 홍보 추진 내용 포함
 - (연구개발 분야) 연구·개발의 역할이 중요, 실용화로 이어지는 중간 단계의 역할과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
 - ⇒ (반영)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양잠산물 기능성 연구 내용 포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그린바이오산업팀 (2024.12.20. 제출)

개정안은 종합계획 수립 시 기능성 양잠농가 및 기능성 양잠산업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의견수렴 절차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법률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5조제4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행계획, 같은 조 제5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계획의 수립단계에 의견수렴절차를 반영할 필요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현행법 제5조제3항은 종합계획 수립 전에 ‘중앙 농업·농촌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일부 가능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동 심의회를 ①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12인) ②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의 교수·연구위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종사 경력자(7인)로 구성하고 있어 해당 심의과정에서 기능성 양잠농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바, 의견수렴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관련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9조(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중앙 농업정책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 농업정책심의회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중앙 농업정책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1.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2명 이내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교수·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7명 이내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생략)

⑥ 중앙 농업정책심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 농업정책심의회에 전문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위원회 위원】

구분	순번	소속 및 직위	임기시작일	임기종료일
민간위원 (18명)	1	농협중앙회 회장	당연직	당연직
	2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당연직	당연직
	3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당연직	당연직
	4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당연직	당연직
	5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당연직	당연직
	6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회장	당연직	당연직
	7	한국농축산연합회장 상임대표	당연직	당연직
	8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	당연직	당연직
	9	한국외식산업협회 회장	당연직	당연직
	10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당연직	당연직
	11	(사)소비자시민모임 회장	당연직	당연직
	12	한국식품연구원 연구위원	2020.12.26.	2025.6.30.
	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2020.12.26.	2025.6.30.
	14	서울대학교 교수	2020.12.26.	2025.6.30.
	15	(前)경북대학교 교수	2020.12.26.	2025.6.30.
	16	대한영양사협회 회장	2020.12.26.	2025.6.30.
	17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표	2020.12.26.	2025.6.30.
	18	농수축산신문 발행인	2020.12.26.	2025.6.30.
정부위원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당연직	당연직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2024.12.20. 제출)

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안의 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및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종합계획 수립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귀농어업인¹²⁾ 및 귀촌인¹³⁾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및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농어·귀촌 현황과 전망 2.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3. 귀농어·귀촌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귀농어·귀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의 육성 방안 5. 귀농어·귀촌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6.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어업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귀농어·귀촌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8. 그 밖에 귀농어·귀촌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종합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
<신설>	

현행	개정안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귀농어·귀촌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 이전 5개년도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4항의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 ⑧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2) 검토의견

현행법에 따른 종합계획은 귀농어·귀촌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귀농어·귀촌 현황과 전망,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귀농어·귀촌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귀농어·귀촌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등을 그 내용으로 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부처 간 정책 조율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 농업

12)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4. “귀촌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3월, 귀농소득·귀촌 생활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제2차('22~'26)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2차('22~'26) 종합계획 주요내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청년농육성정책팀(2024.12.24. 제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제2차('22~'26)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귀농귀촌종합센터 및 주요 시군 귀농귀촌인 단체와의 정책 설명회, 포럼 등을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였음.

【제2차 종합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내역】

○ 간담회('21.3.31, 대면 회의)

- 참석: 농식품부, 농정원 귀농귀촌종합센터, 시군 귀농귀촌인 단체*
- * 홍천·단양·김제·순천·합천 귀농귀촌인 협의회, 홍성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 주요 의견
 - 민간을 활용한 현장 밀착 지원체계 구축
 - 귀촌인에 대한 지원책 마련 필요
 - 지역별 상황에 맞는 정책 추진
 - 생계 목적의 '귀농', 생활 목적의 '귀촌'으로 구분, 정책 차별화 등

○ 귀농귀촌 정책 포럼(4회, '21.3.31~8.23, 대면 회의)

- 참석: 농식품부, 농정원 귀농귀촌종합센터, (연구위원) 국토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통계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충남연구원, (학계) 충북대, 전북대, (지자체) 전북도, 완주군, (단체) 전국귀농운동본부, 전북 귀농귀촌지원센터, 완주군 귀농귀촌지원센터 등
- 주요 의견
 - 커뮤니티 지원, 지역주민과의 융화 지원
 - 귀촌 지원 강화, 귀촌인 커리어·재능 활용
 - 정주 환경 개선, 농촌지역 생활 SOC, 타 부처 정책 연계 등

☞ 간담회 및 정책 포럼 논의 사항 등을 바탕으로 종합계획 수립

○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22.2.10, 서면)

-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심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청년농육성정책팀(2024.12.24. 제출)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종합계획 수립 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종합계획을 보다 실질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현재 시행중인 의견 수렴 절차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법률적으로 도모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5조제5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계획을, 같은 조 제6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계획의 수립단계에 의견수렴절차를 반영할 필요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현행법 제5조제4항은 종합계획 수립 전에 ‘중앙 농업·농촌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일부 가능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9조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위원구성을 살펴볼 때, 해당 심의과정에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의견수렴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관련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9조(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의 구성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이하 “중앙 농업정책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 농업정책심의회의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중앙 농업정책심의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1.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2명 이내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교수·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7명 이내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생략)

⑥ 중앙 농업정책심의회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 농업정책심의회에 전문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8조(중앙심의회의의 구성 등) ① 중앙심의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심의회의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중앙심의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수산업·어촌 관련 단체의 장: 12명 이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명 이내
 - 가. 수산업·어촌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교수 또는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나. 수산업·어촌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위원회 위원】

구분	순번	소속 및 직위	임기시작일	임기종료일
민간위원 (18명)	1	농협중앙회 회장	당연직	당연직
	2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당연직	당연직
	3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당연직	당연직
	4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당연직	당연직
	5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당연직	당연직
	6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회장	당연직	당연직
	7	한국농축산연합회장 상임대표	당연직	당연직
	8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	당연직	당연직
	9	한국외식산업협회 회장	당연직	당연직
	10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당연직	당연직
	11	(사)소비자시민모임 회장	당연직	당연직
	12	한국식품연구원 연구위원	2020.12.26.	2025.6.30.
	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2020.12.26.	2025.6.30.
	14	서울대학교 교수	2020.12.26.	2025.6.30.
	15	(前)경북대학교 교수	2020.12.26.	2025.6.30.
	16	대한영양사협회 회장	2020.12.26.	2025.6.30.
	17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표	2020.12.26.	2025.6.30.
	18	농수축산신문 발행인	2020.12.26.	2025.6.30.
정부위원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당연직	당연직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2024.12.20. 제출)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위원】

구분	순번	소속 및 직위	임기시작일	임기종료일
민간위원 (19명)	1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부 대표이사	2024.04.01	2026.03.31
	2	한국수산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회장	2024.04.01	2026.03.31
	3	(사)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회장	2024.04.01	2026.03.31
	4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2024.04.01	2026.03.31
	5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2024.04.01	2026.03.31
	6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2024.04.01	2026.03.31
	7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회장	2024.04.01	2026.03.31
	8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2024.04.01	2026.03.31
	9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회장	2024.04.01	2026.03.31
	10	한국굴수하식연합회 조합장	2024.04.01	2026.03.31
	11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2024.04.01	2026.03.31
	12	한국수산회 회장	2024.04.01	2026.03.31
	13	대상양식영어조합법인 이사	2024.04.01	2026.03.31
	14	(주)링스업 영업본부장	2024.04.01	2026.03.31
	1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2024.04.01	2026.03.31
	16	제주대학교 교수	2024.04.01	2026.03.31
	17	부경대학교 교수	2024.04.01	2026.03.31
	18	송의여자대학교 교수	2024.04.01	2026.03.31
	19	하나수산 대표	2024.04.01	2026.03.31
정부위원	1	해양수산부 장관	당연직	당연직

※자료: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수산정책과 (2024.12.20. 제출)

사.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안의 내용

현행법은 말산업의 지속적·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말산업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 시 말사업자¹⁴⁾ 및 말산업¹⁵⁾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말산업 육성의 방향과 목표 2. 말의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3. 말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말산업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말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제20조에 따른 말산업특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말산업의 국제 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8. 말의 방역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9.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승마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말사업자 및 말산업과 관련된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
<신설>	

14)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말사업자”란 말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5) 1. “말산업”이란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현행법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은 말산업 육성의 비전·목표와
이의 달성을 위한 주요 추진 전략·과제를 제시하는 계획임.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6월, 말문화 확산, 말산업 가치창출 및 말
산업 사회공헌 전략과제를 제시하는 “제3차(’22~’26) 종합계획”을 수립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3차(’22~’26)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 주요내용】

비전	말과 함께, 국민 즐거움과 미래가치 창출 - 더 가까운 馬, 더 든든한 馬, 더 따뜻한 馬 -		
목표	경제적 목 표	사회적 목 표	사회적 목 표
	- 승마산업 규모 5,000억원 - 승마산업 일자리 9,000명 - 정기승마인구 80,000명		- 말이용 만족도 향상 - 말산업 가치 제고
전략	즐기는 말문화 확산	말산업 가치 창출 확대	말산업 사회공헌 강화
추진 과제	① 정기 승마인구 확산 ① 승마대회 체계화 ② 학생승마 생활체육화 ③ 유소년 승마지원센터 설치 ② 다양한 승마문화 조성 ① 다채로운 말 체험프로그램 확대 ② 관광·체험형 복합시설 등 보급 ③ 수요자별 맞춤형 홍보 강화 ③ 안전한 승마환경 강화 ① 안전한 말 이용체계 구축 ② 우수 승마시설 지정제 운영 ③ 맞춤형 기승프로그램 보급	① 국산마 경쟁력 강화 ① 국산 승용마 개량 ② 말 표준 조련시스템 구축 ③ 국산 승용마 브랜드 도입 ② 말산업 유통 활성화 ① 말 유통·이력 관리 체계화 ② 온라인 등 말 거래시스템 다양화 ③ 말 활용 다양화 ③ 말산업 인력 전문화 및 취창업지원 강화 ① 말산업 전문인력 육성 ② 말산업 취·창업 지원 강화 ③ 말산업 자격제도 체계화	① 재활·힐링 승마 활성화 ① 재활 프로그램 표준화 ② 공공승마시설 중심 재활승마 확대 ③ 힐링 승마 육성체계 마련 ② 말 동물복지 선도 ① 말 복지 가이드라인·인증제 도입 ② 경주퇴역마 종합관리체계 구축 ③ 말 종합방역체계 구현 ③ 사회 공익 기능 확대 ① 말 관련 공익사업 확대 ② 말산업 관련 민관협력 강화 ③ 건전한 말 문화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2024.12.20. 제출)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말산업 및 말사업자) ① 「말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 말의 생산업·사육업 및 유통업
- 말이용업
- 말조련업·장제업(裝蹄業)·재활승마지도업 또는 경마운영업 등 말을 이용하거나 매개로 한 서비스업
- 말의 산물(産物) 또는 부산물을 이용한 식품·약품 또는 향장품(香粧品)의 제조업·판매업
- 말의 사육 또는 이용 등에 필요한 물품의 제조업·판매업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산업에 필요한 부대산업

그런데 말산업 육성 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제고하고 정책대상자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되는 말산업 육성정책 방향 등을 설정할 때 말산업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같은 취지에서 「제3차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22~'26)」을 수립할 때 업체간담회,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 등 다양한 경로로 말생산 및 조련센터, 전문인력양성기관 등 이해 관계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한 바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제3차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내역】

○ (사전 의견수렴) 총 8차에 걸쳐 말산업 관련자에 의견수렴

일자	대상	방식
'21.2.24.	생산 및 조련(승용마 생산자, 거점번식센터, 거점조련센터)	대면 회의
'21.2.26.	말산업 특구(제주, 경기, 전북, 경북 지자체)	대면 회의
'21.3.4.	승마 및 대회(민간승마시설, 대한승마협회 등 관련 협회 5개)	대면 회의
'21.3.5.	전문인력양성기관(고교 6, 대학 5)	대면 회의
'21.3.17.~18.	농협, 축협, 농정원, 수의사, 장제사 등 관련 기관	전화 인터뷰
'21.3.19.	말산업전문가(학계, 업계, 산업계)	대면 회의
'21.3.17.~26.	승마고객, 자격증 소지자, 일반인 등	온라인 설문
'21.3.31.~4.1.	제주지역 농협, 축산물공판장, 축협, 한라마협회, 부산물 업체, 한국 경주마생산자협회, 축산진흥원, 승마시설 등	현장 방문

- (현장 의견 수렴) 승마시설, 전문인력 양성기관, 생산농가, 조련센터 관계자 등 현장 방문을 통한 의견수렴('21.9.17.~11.5.)
- (현장 간담회) 지자체 말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22.6.7.~8.)
 - 「제3차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안) 관련 질의 답변
- (전문가 간담회) 생산육성, 유통이용, 승용마 조련, 재활승마, 인력양성, 승마단체, 승마시설 생산자 등 전문가 대상 계획안 공유 및 의견 수렴(22.6.15.)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2024.12.20. 제출)

개정안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말산업 관련 단체의 의무적 의견수렴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현재 시행중인 의견수렴 절차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법률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현행법에서 시행계획을 약칭한 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을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17